

과업지시서

I. 과업내용

1. 과업내용 : 2026년 화성도시공사 탁구운영부 훈련용품 구입(단가계약)

2. 물품공급 및 제반사항 협의

- 1) 종류 : 탁구 훈련용품
- 2) 금액 : 금 161,984,000원(금일억육천일백구십팔만사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 3) 세부내역 : 붙임 참조

3. 납품조건

- 1) 납품기간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2) 초도납품 :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 2) 납품장소 :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향남읍 향남로 470
(화성종합경기타운 실내체육관 2층 탁구연습장)

3) 특수조건

- 요청 제품에 기관명 마크 부착 후 납품

※색상, 글씨체, 글씨크기 등 화성도시공사 탁구운영부 종목 지도자와 추후협의

- 계약상대자는 탁구운영부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특수성을 감안하여 납품되는 제품의 브랜드, 규격, 색상, 사이즈 등을 탁구운영부 담당자 및 지도자와 사전에 철저히 협의하여 발주기관에서 원하는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 구입 후 동일상품에 대하여 사이즈 및 색상 교환이 가능하여야 함

4. 정 산 : 매회 납품 완료 후 품목 수량 및 금액에 따라 정산

5. 과업수행 일반지침

1) 과업의 수행

- 본 과업은 계약체결 즉시 착수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을 위한 납품일정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반드시 협의 후 수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서 제시한 지정제품을 규격과 동등하거나 동등 이상의 성능 및 품질을 유지하는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 납품요청 제품이 납품이 중지된 제품이거나, 생산중지 등의 사유로 납품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납품하고자 하는 제품이 지정된 제품보다 동등 이상의 품질인 제품임을 발주기관의 해당 부서 담당자의 검토를 받은 후 대체 납품할 수 있다.
- 다만, 대체 제품의 단가는 계약 체결시의 단가를 초과할 수 없다.
- 본 과업 내용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규 및 지침 등에 의거 업무

담당자와 협의하여 수행하거나 결정한다.

2) 과업 변경

- 과업수행 중 여건변동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과업범위 또는 내용의 변경, 기타사항에 대해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협의하여 범위 및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3) 계약의 해지

- 발주기관은 아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물품공급자는 손해 등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또한 아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물품공급자는 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산서 및 사업 추진내용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사업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 제반 계약조건과 지시사항을 위반 또는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발주(계약)업체가 요청하는 시기와 물품 수량을 납품하지 아니하고 요청 시 기로부터 15일 이상 지체된 경우
 - 기타 감독직원이 계약업체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4) 지연배상금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납품이 지연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에 따라 지연배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조건 및 계약에 명시된 지시사항 등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해지 및 계약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다.

5) 검사방법

- 계약상대자는 계약물품의 규격 등이 적합한 지 확인을 위한 시제품을 제시하여 사전 확인한 후 포장하여야 한다.
- 상기 필요조건에 명시된 구비조건을 확인 검사하고 이에 적합한 것을 합격으로 한다.
- 검사는 발주(계약)기관에서 지정한 검사관이 이행한다.

6. 기타 일반사항

- 본 과업지시서의 해석에 대해 의견차이가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과 물품공급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 기타 상기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는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 예산·회계법 관련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계약기간중 대표자, 상호 등을 변경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계약)기관의 서면 승인 없이 계약이행에 따르는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양수할 수 없다. 다만, 발주(계약)기관에서 계약상대자의 권리와 의무의 양도·양수를 승인한 경우에는 계약서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 일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II. 특수조건

제1조(목적)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 상대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품질)

- ① 계약상대자는 질에 하자가 없는 우수한 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 ② 계약상대자는 규격심사에 제출된 물품 또는 그 이상의 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 ③ 계약상대자는 규격서 해당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물품을 납품하였을 경우에는 전량 교환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모든 재정상의 손실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3조(납품)

-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배송)기일까지 해당 물품을 지정한 장소(배송지)에 배송(납품) 완료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배송)된 물품을 검사(수령)하기 까지 발주(계약) 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 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 ③ 발주(계약)기관이 필요에 따라 분할 납품을 요구·지시하거나,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 납품을 할 수 없다.
- ④ 발주기관에서 매 회마다 납품을 요구하는 품목과 수량을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시점에 **15일 이내(국제·국내시합 등 긴급사항 발생 시 7일)**에 납품하지 못할 경우 발주기관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 ⑤ 매 회 최소 납품 요구 금액(수량)은 100만원(탁구러버제품의 경우 최소 100개 이상) 이상으로 하되, 시합 출전, 전지훈련, 시합직전 훈련 등 긴급한 사유 혹은 발주(계약부서)의 요청이 있을 경우 발주(계약)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⑤ 제1항 단서 규정에 의거 분할납품(배송)을 지시한 경우에는 납품완료 후 납품 잔여 물량에 대하여는 계약(납품)기간 내에 발주(계약)기관 지정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제4조(규격 및 포장)

- ①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물품내역서 및 사양서와 발주(계약)기관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에 맞아야 하며, 구매목적에 적합한 신품이어야 한다.

- ② 계약서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규격 등에 부합되는 견고하고 손상없는 물품이어야 한다.
- ③ 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 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하여야 한다.
- ④ 계약상대자는 규격서에 명시된 각 물품별 조건, 규격, 품질, 검사방법, 포장방법 등을 숙지하고, 그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5조(납품장소 및 인수방법)

- ① 물품의 납품장소는 발주(계약)기관에 제공하는 배송지로 하며, 납품(배송) 등에 따른 모든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제6조(검사)

-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발주(계약)기관에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 납부분에 대하여 검사 또한 같다.
- ② 제1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시정 조치한 결과를 통보받아 재검사를 실시한다.
- ③ 제1항의 의하여 검사를 요청한 경우의 납품일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다.
 - 1. 납품기한 내에 검사 요청을 하고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검사요청일
 - 2. 납품기한 내에 검사 요청을 하였으나 납품기한 이후에 검사 불합격 등에 따른 보완조치를 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검사에 합격한 날
 - 3.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검사 요청을 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검사에 합격한 날
- ④ 납품 완료일은 계약상대자가 검사를 요청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검수기간을 초과하였을 때에는 초과한 기간만큼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제7조(지체상금)

-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배송)기한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기 납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당해 부분을 인수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한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기 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제8조(계약금액의 정산)

-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납품)기한 내에 발주(계약)기관의 배송(납품)

지시에 따라 물품을 배송(납품)한 후 잔여물량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금에 대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 ② 계약금액을 정산한 경우에는 정산금액을 공제한 후 대가를 지급한다.

제9조(계약내용의 변경)

이 조건에 대한 규정의 신설, 삭제,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호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대가의 지급)

-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검사에 합격한 후 대가지급 전 사용 중 제조상의 결정적인 하자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대체 또는 시정하여 재검사를 한 후 대가를 지급한다.
- ③ 발주(계약)기관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에 그 청구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1조(계약의 해석 및 관할)

- ① 이 계약서의 규정에 관한 해석상의 문제가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고,
- ② 제1항의 협의가 성립되지 못하거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계약)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